◉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8급 1명) 조정하고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